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서구 결산검사위원회

검 사 의 견 서

우리는 1996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받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1995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관련법규에 맞게
표시되어 있으며, 결산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 명시하여 문제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6. 7. 29.

결산검사대표위원	서구의회의원	천희철
위 원	세 무 사	김청수
위 원	공인회계사	노관승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목 차

1. 세입결산검토
2. 세출결산검토
3. 계속비 검토
4.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5. 기금결산 검토
6. 공사발주현황 검토

1. 세입결산검토

○ 1995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가)	징수 결정액(나)	수납액(다)	미수납액(라)	비율	
					다/나	라/나
95년	69,165,094	79,458,316	76,963,589	2,494,727	96.9%	3.1%
94년	86,056,800	97,111,705	94,799,569	2,312,136	97.6%	2.4%
증감	△16,891,706	△17,653,389	△17,835,980	182,591	△0.7%	0.7%

1) 상기 비교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구청의 분구로 인하여 예산액 및 결산액의 절대적인 금액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결산의 중요한 지표인 실제수납비율은 전기대비 0.7%가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수납금액도 전기대비 182,591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차후 수납을 제고 및 미수납액 회수방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입의 실제수납비율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가)	징수 결정액(나)	수납액(다)	미수납액(라)	비율	
					다/나	라/나
95년	1,883,961	3,254,120	2,082,999	1,171,121	64.0%	36.0%
94년	991,600	1,535,837	1,132,997	402,840	73.8%	26.2%
증감	892,361	1,718,283	950,002	768,281	△9.8%	9.8%

주차장 특별회계의 실제수납비율은 전기대비 약 10%가 하락되었는바 수납을 제고에 대한 조속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출결산 검토

○ 1995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가)	지출액(나)	의 년 도 이 월 액(다)	불 용 액(라)	비율(라/가)
95년	75,824,299	59,939,328	7,604,544	8,280,427	10.9%
94년	93,350,350	77,459,672	9,025,901	6,864,777	7.4%
증(감)	△17,526,051	△17,520,344	△1,421,357	1,415,650	3.5%

1) 상기 표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95회계년도의 예산현액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결산상 불용액은 전기대비 1,415,65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도 전기대비 3.5%나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또는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상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세출예산의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원 인 별	95년	94년	증(감)
계획변경 취소	137,460	942,647	△ 805,187
예산집행미사유발생	1,483,829	52,082	1,431,747
예산절감	1,718,305	330,242	1,388,063
예산집행잔액	3,187,555	3,973,646	△ 786,091
보조금 집행잔액	483,868	568,372	△ 84,504
기 타	—	354,856	△ 354,856
일반회계 계	7,011,017	6,221,845	789,172
특별회계 계	1,269,410	642,932	626,478
합 계	8,280,427	6,864,777	1,415,650

불용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집행 미사유 발생”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 및 합리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계속비 검토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년도 경비중심의 전통적인 예산제도에서 진일보한 사업 중삼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투자의 대형화, 장기화로 인하여 완성연도까지 수년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증대하게 되자 이를 계속적으로 계속지급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장기계속사업은 총액과 그 연차지출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관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계속비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구청의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의 양3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 사업은 상기 계속비의 규정이 적용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상 다음과 같은 업무상 착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 세출예산의 당해년도 집행잔액을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익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항목으로 세입예산 금액에 포함시킴으로서 95회계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액이 각각 710,527천원 (93회계연도부터 누계금액은 855,515천원임) 만큼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2) 세출예산의 당해년도 집행잔액은 계속비로서 익년도로 모두 이월시켜야 하나 일부금액에 대하여 불용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95회계연도 50,729천원, 92회계연도부터 누계금액 209,269천원)

3) 전년도 세출결산서상 익년도 이월액 금액과 다음연도 세출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가. 1995. 12. 30. 예산이 집행된 “청소년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연구자문실시비” (기획관리-일반수용비 10,000천원)는 용역의 성격상 가정복지과(청소년계)의 예산과목(연구개발비)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나 소관부서의 예산편성(추경포함)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시 누락되었으므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연도말에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의 예산에서 전격적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1995회계연도 중 집행부서의 세출예산이 의회운영비로 예산 재배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 역	금 액
95. 1. 11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취소 청구소송 위임계약금 (기획관리 - 법무관리 - 일반수용비)	2,000천원
11. 20	공무원 체육대회 제경비 (내무행정 - 서무관리 - 보상금)	260천원
11. 20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내무행정 - 서무관리 - 급량비)	130천원
11. 25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 (내무행정 - 서무관리 - 복리후생비)	1,385천원
11. 30	'95. 하반기 공무원 취미클럽 제경비 (내무행정 - 서무관리 - 복리후생비)	260천원
계		4,035천원

상기와 같이 부서간의 예산재배정은 예산집행을 문란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시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항목은 예산편성시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교통사업 수입중 1995년 결산서상 잡수입의 세입징수결정액 1,094,165,555원중 전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은 797,200,000원인바 1994년도 결산서상 과태료 미수납액은 402,840,000원으로 전년도의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 394,360,000원이 1995년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883,961,000원에 불과한바 394,360,000원의 미수납액이 추가계상되었음은 예산편성 및 결산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라.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연구개발비 56,670,000원은 94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인바 95년도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세출결의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 채권 현재액에 있어서 새마을융자금은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별도 운영해야 되나 일반회계에 편성관리하여 자금관리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해 그 고유 목적사업에 활용치 못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 95년도 새마을 융자금 채권액 : 404,500천원

5. 기금 결산 검토

현재 서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95회계
년도 결산내역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결산상 미비점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 1) 기금대차 보고서상 전년도(94년) 현재액과 당해년도말(95년)
현재액의 자산합계와 부채 및 자본합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 분	94년	95년
자 산 합 계	445,685,000	633,685,000
부 채 및 자본합계	587,382,752	553,685,000
차 이	△ 141,697,752	80,000,000

- 2)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94년 결산서상 당해년도말 잔액과 95년
결산서상 전년도말 현재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4년 결산서상 연도말 잔액	135,706,871
95년 결산서상 이월잔액	55,706,871
차 이	80,000,000

6. 공사발주현황검토

○95년도 공사발주현황을 검토한바 다음 내역과 같음

경쟁·수의 계약구분	건 수	입찰 참가자수	공사예정 금액 (A)	계약(낙찰) 금액 (B)	비율
수의계약	112	.	3,485,997,216	3,268,887,340	93.77%
경쟁입찰	4	5인이하	629,671,367	590,335,000	93.75%
	22	5인이상	2,965,693,192	2,550,119,230	85.98%

입찰참가자수가 적은 지명경쟁분공사에서 상대적으로 낙찰비율이 높은바 업무집행에 철저한 관리통제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